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3가단39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동한, 조수오

피 고 1. B

2. C

3.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가. 피고 B와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2.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위 1. 가.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7,607,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3.
12.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D는 2023.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및 제2항, 피고 B는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에 주문 제1의 가.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이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3. 25.부터 2022. 12. 28.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양곡 등을 공급하였으나, E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56,84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2. 20. ‘E은 원고에게 56,8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2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3차9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나. E은 2022. 10. 15. 피고 C에게 서울 강남구 F건물, G~H호 소재 슈퍼마켓 매장 내 모든 시설과 영업권 및 모든 상품(이하 ‘이 사건 시설 등 일체’라 한다)을 양도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 시설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E은 피고 주식회사 D(2022. 12. 12.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당시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D’라 한다)에 다시 이 사건 시설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뒤 E은 2023. 2. 11.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시설 등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등 권리 일체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양수도 대금은 3억 2,000만 원이 남아있었다).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5.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550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 C', 청구금액 '57,607,190원', 압류·추심할 채권 'E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 시설 등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3. 6. 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E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그 거래 경위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 2)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한편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구 시설 등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시설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채무자)는 피고 D이다. 그렇다면 피고 B는 피고 D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족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 C에게도 그러한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3억 2,000만 원을 2023. 8.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23. 6. 22. 작성 2023년 증서 제574호, 갑 제6호증)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피고 D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원고, 피고 C, 피고 D가 모의하여 위 공정증서 및 청구이의 소송 등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모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피고 C, 피고 D가 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심의 의사나 동기를 가지고 모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추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E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추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57,607,1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 1)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2)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각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예현

별지